

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3. 11.(금)

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원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원

형태근 위원

양문석 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회의 사유

- o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1) 「도메이니름관리준칙」 일부 개정 승인에 관한 건 - (2011-16(서)-058)

o 순한글 국가도메인 도입에 따라 도메인명으로 사용 가능한 문자 등록 기준 및 국가 코드 추가 등을 위해 마련된 동 준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.

※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「도메이니름관리준칙」 제·개정안은 인터넷 주소관리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

o 주요 내용

① 한국도메인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록기준 신설(안 제5조 제3항)

< 등록 기준 >

1. 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,172자, 영문자, 숫자, 하이픈[-]의 조합으로 구성하되,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2. 도메이니름 길이는 17자 이하만 가능함
3. 도메이니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,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음

※ 2번과 3번은 기술적 제한에 따른 기준임

② 한국도메인을 포괄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(안 제3조, 안 제4조 2항, 안 제5조 1항 내지 2항, 안 제14조, 안23조 1항 10호, 안 [별표 1])

※ (개정 내용) kr→kr과 한국, kr도메인→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

③ 신규도메인 도입시 「초기 등록업무 계획」 수립·시행 근거 보완(안 제9조 제1항)

④ 기존 kr도메인 등록기준 중 누락사항 보완(안 제5조 제1항 3호, 안 제5조 제2항 3호)